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00
----------	-----

2024. 10. 14.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2024. 9. 30. 노애자 의원 등 9인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노애자 의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의5)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의4)

- 다.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5조의5)
- 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주간 개방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제5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가. 조례개정 취지

-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따른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노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임.

나. 검토내용

- 국가보훈부에서는 일상생활속에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하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용산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에 반영하

고 있으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 한편, 서울시에서는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주택가 인근 주민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시·구비 정률보조(50:50)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음. 현재 우리구는 총 13개소, 406면에 대해 운영 중에 있음.
- 「주차장법」 제19조의24제5항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7²⁾에서는 기계식주차장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대신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차장법」 제2조³⁾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⁴⁾에서는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장

1) 주차장법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⑤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운영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이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 기간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비용을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4) 주차장법

에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5)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6)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방기본법」 7)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같은 법 제56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종합해 보면 「주차장법」에 따른 경차 전용주차구획이나 조례에 따른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등은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으며 ‘전용주차구역’은 개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있음을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의5(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제1항 중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는 제11조의4제1항⁸⁾에서 ‘공공기관’으로 이미 약칭되어 있는 바 <예시>⁹⁾와 같이 조 제목과 본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현재 우리구의 국가유공자 대상자(본인 및 유족 포함)는 총 5,894명 중 우선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2,902명으로 차량 소유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

연번	근거법률	적용대상	대상인원(명)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애국지사 본인	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본인	846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9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본인	1,65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300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본인	2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14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13
총계			2,902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4(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강남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9) <예시>

제11조의5(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 또한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은 22개소 30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계 (A+B+C)	노상(A)		노외(B)		부설(C)	
22개소 (30면)	2개소 (3면)		18개소 (25면)		2개소 (2면)	
	1개소 (1면)	압구정로 29길	13개소 (1면)	역삼1문화센터, 대치2문화센터, 논현초교, 도곡초교, 신곡초교, 포이초교, 영희초교, 대왕초교, 대청역, 구룡산 제2호, 개포동공원, 탄천주차장, 밤고개로21길	2개소 (2면)	강남구청 부설주차장 (1면)
			3개소 (2면)	언북초교, 언주초교, 역삼문화공원 제1호		강남구의회 (1면)
1개소 (2면)	현릉로745길	2개소 (3면)	압구정428, 탄천 제2호 주차장			

-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보훈부에서 표준 조례안¹⁰⁾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임. 다만, 「주차장법」 제2조 제9호¹¹⁾에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는 바 제2조(정의) 중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하고 제5호에 <예시>¹²⁾와

10) [첨부] 참조

11) 주차장법 제2조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2) <예시>

5. “우선주차구획”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같이 “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국가유공자 등”에는 유족 및 가족도 포함¹³⁾되는 의미이나 조례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만 적용하려는 취지이므로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항은 제1항을 수정하는 경우 <예시>¹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3항은 조문정비, 제4항은 <예시>¹⁵⁾와 같이 별표 9와 별표 10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 <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제5항은 조문의 명확화, 제6항은 약칭의 사용하고 제7항에서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동주차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시>¹⁶⁾와 같이 명확한 상황을 적시하여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따라서 신설하는 제11조의5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예시>¹⁷⁾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4) <예시>

② 우선주차구획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5) <예시>

④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은 별표 9에 따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별표 10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16) <예시>

⑦ 구청장은 국가유공자가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거부 또는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안 제2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에서는 영 제12조의1 718) 규정에 따라 인근주차장의 확보를 **60일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법정 최대기간인 60일의 기간 내로 동일하게 조례에 규정한 것임.
- **안 제25조의5(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에서는 법 제19조제16항¹⁹⁾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법률의 위임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다만, 제25조의5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예시>²⁰⁾와 같이

17) <예시>

- 제11조의5(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 ② 우선주차구획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 ③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④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은 별표 9에 따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별표 10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신분증서 및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이하 “신분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국가유공자가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거부 또는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8)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9) 주차장법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⑩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 <예시>

- 제25조의5(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31조(보조의 대상)제5호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만 개방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주간 또는 야간까지 개방하고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의 이용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한정된 민간 부설주차장의 이용범위를 주간과 일반인으로 범위를 넓혀 제한된 부설주차장 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안 별표 9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은 <예시>21)와 같이 각각 별표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바닥면 표기는 ‘국가유공자 우선’으로, 안내표지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일상생활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신설하고 「주차장법」에서 조

다.

- ② 개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차구획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최소 3면 이상으로 한다.
 2. 1일에 7시간 이상, 1주에 35시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1) <예시>

[별표 9]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제11조의5제4항 관련)

[별표 10] 국가유공자 안내표지판(제11조의5제4항 관련)

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획은 법령사항이 아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과 같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과 같이 일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적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첨부]

<표준 조례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안)

1. 바닥면 도안



2. 안내표지판 도안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400

제안연월일: 2024. 10. 14.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을 정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의 표시사항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방주차장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2. 수정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이용 대상에 관한 정의 규정 정비(안 제11조의5)
- 나.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25조의5)
- 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의 표시사항 정비(안 별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5. “우선주차구획”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안 제11조의5의 제목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우선주차구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는 “우선주차구획은 국가유공자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우선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별표 9에”를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은 별표 9에 따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별표 10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유공자 등은”을 “국가유공자가”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신분증서 및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를 “국가유공자에게 신분증서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

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를 “국가유공자가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거부 또는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거나”로,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를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로 한다.

안 제25조의4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5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개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 제2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 별표 9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제11조의5제4항 관련)

<주차구획>



[별표 10]

국가유공자 안내표지판(제11조의5제4항 관련)

<안내표지판>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뜻은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가.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u></p> <p>나.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u></p> <p>다.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u></p> <p>라. <u>「참전유공자 예우</u></p>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

증환자 및 고엽제후

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

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

<신 설>

<신 설>

제11조의5(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
준 등) ① 법 제6조제2
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
모가 100대 이상인 공
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
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
차대수의 100분의 1 이
하를 국가유공자 등 우
선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

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5. “우선주차구획”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
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11조의5제4항에 따
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11조의5(국가유공자 우

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

----- 공공기관의 부

설주차장-----

----- 우선주차구획

-----.

② 우선주차구획은 국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
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
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
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가유공자가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
증환자 및 고엽제후
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
인

<삭 제>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삭 제>

8.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에 제73조
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삭 제>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은 주차장 출
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③ 우선주차구획-----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별표 9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

-----.

④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은 별표 9에 따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별표 10에 -----
-----.

⑤ ----- 국가유공자가 -----

----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신분증서 및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이하 “신분증서등”이라 한다)-----.

⑥ -----
-- 국가유공자에게 신분증서등의 -----

<신 설>

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우선주차
구획에 국가유공자 등
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
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
로 이동하여 주차하도
록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의4(기계식주차장
치의 운행중지명령) 구
청장은 법 제19조의24
제5항 및 영 제12조의1
7에 따라 인근(제22조
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를 말한
다.)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의 기간 내에 인근 주
차장을 확보할 것을 기

-----.

⑦ ----- 국가유공자가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거부 또는 탑승하지 않
고 주차하거나 -----
-- 확인된 경우에는 다
른 장소에 -----
-----.

제25조의4(기계식주차장
치의 운행중지명령) --

----- 말한다)-----

<신 설>

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5(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구
청장은 법 제19조제13
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
기 위하여 개방주차장
으로의 지정을 동의 및
신청하는 경우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
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
제25조의5(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
11조의2에 따라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
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
리책임이 있는 자가 개
방주차장으로 지정받
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에 필
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개방주차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
설주차장의 소유자 또
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

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차구획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최소 3면 이상으로 한다.

2. 1일에 7시간 이상, 1주에 35시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

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개정안 제2항과 같음)

1. (개정안 제2항제1호와 같음)

2. (개정안 제2항제2호와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는 자와 개방주차장 관
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에 관한 사항

2.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 등에 관한 사

항

3.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

④ 구청장은 개방주차

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금 개방주차장 운영 사

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 제4항과 같음)

<p>제31조(보조의 대상) 제2 7조에 따른 보조를 받 을 수 있는 대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5. 건축물부설주차장을 <u>야간에 개방하여 주민</u> <u>의 사용에 제공코자 하</u> <u>는 자에게 주차시설 개</u> <u>선비용 등을 보조할 수</u> <u>있다.</u></p> <p>6. (생 략)</p>	<p>제31조(보조의 대상)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주간 또는 야간에 개방</u> <u>하여 해당 시설물의 이</u> <u>용자 외에 일반인의 이</u> <u>용</u> ----- -----.</p> <p>6. (현행과 같음)</p>	<p>제31조(보조의 대상)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	---	---

수정안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별표 9]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제11조의5제4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주차구획></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안내표지판></p>  </div>	<p>[별표 9]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제11조의5제4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주차구획></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삭 제></p> </div>

<신 설>

[별표 10] 국가유공자 안내표지판(제11조의5제4항 관련)

<안내표지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5. “우선주차구획”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11조의5,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획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은 별표 9에 따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별표 10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신분증서 및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이하 “신분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국가유공자가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거부 또는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 및 영 제12조의17에 따라 인근(제22조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를 말한다)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5(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개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차구획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최소 3면 이상으로 한다.

2. 1일에 7시간 이상, 1주에 35시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5호 중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을 “주간 또는 야간에 개방하여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의 이용”으로 한다.

별표 9와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제11조의5제4항 관련)

<주차구획>



[별표 10]

국가유공자 안내표지판(제11조의5제4항 관련)

<안내표지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p>	<p>제2조(정의) ----- ----- 뜻은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u>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u> <u>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국가유공자 본인</u> <u>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 본인</u> <u>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u> <u>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u></p>

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5·18민주유

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

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

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

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

이등급 판정자

5. “우선주차구획”이란 국가유

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11조의5제4항에 따

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11조의5(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

<신 설>

<신 설>

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획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은 별표 9에 따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별표 10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신분증서 및 국가

<신 설>

보훈대상자 확인서(이하 “신분
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
유공자에게 신분증서등의 제시
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국가유공자가 신분
증서등의 제시를 거부 또는 탐
승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운
행중지명령) 구청장은 법 제19
조의24제5항 및 영 제12조의17
에 따라 인근(제22조에 따른 시
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를 말한
다)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 내에 인
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기계
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하

<신 설>

여야 한다.

제25조의5(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

택 등의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개

방주차장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개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개방주차

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설주차

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차구획 5면 이상을 2년 이
상 개방할 것. 다만, 소규모 부
설주차장은 최소 3면 이상으
로 한다.

2. 1일에 7시간 이상, 1주에 35
시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
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효율
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시
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
방주차장 운영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p>제31조(보조의 대상) 제27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건축물부설주차장을 <u>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u>코자 하는 자에게 주차시설 개선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p> <p>6. (생략)</p>	<p>제31조(보조의 대상)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주간 또는 야간에 개방하여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의 이용</u>----- --.</p> <p>6. (현행과 같음)</p>
--	---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별표 9] <u>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u>(제11조의5제4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구획></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p><신 설></p>	<p>[별표 10] <u>국가유공자 안내표지판</u>(제11조의5제4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표지판></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0
----------	-----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노애자·이향숙·김진경

윤석민·이성수·안지연·

손민기·전인수·황영각 의원

(이상 9인)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의5)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의4)

다.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5조의5)

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주간 개방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별표 9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 및 영 제12조의17에 따라 인근(제22조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를 말한다.)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25조의5(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방주차장으로의 지정을 동의 및 신청하는 경우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차구획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최소 3면 이상으로 한다.

2. 1일에 7시간 이상, 1주에 35시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개방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5호 중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을 “주간 또는 야간에 개

방하여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의 이용”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제11조의5제4항 관련)

<주차구획>



<안내표지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1조의5(국가유공자 등 우선주</u> <u>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u> <u>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u> <u>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u> <u>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u> <u>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u> <u>100분의 1 이하를 국가유공자</u> <u>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u> <u>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u> <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u> <u>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u> <u>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u> <u>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u> <u>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u> <u>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u> <u>가유공자 본인</u> <u>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u> <u>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u> <u>상자 본인</u> <u>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u> <u>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u> <u>참전유공자 본인</u>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별표 9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신 설>

<신 설>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 및 영 제12조의17에 따라 인근(제22조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를 말한다.)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5(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방주차장으로의 지정을 동의 및 신청하는 경우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차구획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최소 3면 이상으로 한다.

2. 1일에 7시간 이상, 1주에 35시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개방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p>제31조(보조의 대상) 제27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건축물부설주차장을 <u>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u>코자 하는 자에게 주차시설 개선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6. (생략) 	<p><u>사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u> ④ <u>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u> <p>제31조(보조의 대상)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 주간 또는 야간에 <u>개방하여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의 이용</u>----- --. 6.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별표 9]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제11조의5제4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주차구획></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안내표지판></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